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99

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고영인·강민정·강득구

김두관 · 김민석 · 오영훈

유정주 • 윤재갑 • 이성만

이형석 · 정성호 · 최혜영

허종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 도록 규정함.

현재, 아동, 청장년, 노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 한 확대 필요가 제기되었음.

이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. 또한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여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 함(안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7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"7세"를 각각 "18세"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"7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"7세"를 "18세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수급아동이 16세 이상이거나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 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	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
지급액) ① 아동수당은 <u>7세</u> 미	지급액) ① <u>18세</u>
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	
지급한다.	
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	제5조(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
공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	공) ①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	
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	
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	<u>1</u>
다)은 <u>7세</u> 미만 아동의 보호자	8세
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・	
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	
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	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	②
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	
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에	
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	
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<u>7세</u>	<u>1</u> 8세
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	
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	
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	
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	
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	

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④ (생 략)
- 제7조(조사·질문 등) ① ~ ④ (생 략)
 -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<u>7세</u>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.
 - ⑥·⑦ (생 략)
- 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수급아동

<u>18세</u>
 ⑥·⑦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) ①
<u>1</u> 8州
<u>다만, 수급아동이 16세</u>

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 이상이거나 수급아동이 「아동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

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 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 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